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國際部(TEL.:553-0941/7)로 연락 바랍니다.

1. EC 원산지 규정 해설

1) 개 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한국의 TV업체가 제품을 제3국에서 생산하여 제3국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할때 이는 한국산으로 간주되어 반덤핑 관세를 부과 받게되며 경우에 따라 소급적용도 될 수 있다.

EC의 수입자가 제3국산으로 신고한 TV가 EC세관에 의해 한국산으로 결정될때 동수입자는 반덤핑 관세 뿐만아니라 벌과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한국은 이제껏 원산지 문제가 없었으나 일본의 경우 가전 및 사무자동화기기들과 관련하여 심각한 원산지 문제에 수차례 직면하였었다.

리코(Ricoh)사의 경우 프랑스 세관이 미국 캘리포니아 현지공장산 복사기에 반덤핑 관세의 소급적용 뿐만아니라 벌과금까지 부과하여 소송중이다. 프랑스의 입장은 동복사기는 일본산이므로 2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일본의 브라더사 역시 독일 및 네덜란드 세관과 대만 현지공장산 전자타자기의 원산지 문제로 현재 소송중이다.

한국도 제3국에서 반덤핑 규제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산지 문제에 직면할 여지가 있다.

2) EC 일반 원산지규정(Regulation 802/68)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 규정으로 실체법(Substantive Rule)과 절차법(Procedural)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중 실체법은 특혜 원산지규정과는 달리 매우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원칙들만을 갖고있다.

○ 1개국에서 생산될 경우

Article 4 (1)

1개국에서 전체 획득한 제품은 그 나라산으로 간주한다. ex) 광물, 농산물 등

○ 2개국 이상이 생산에 참여할 경우

Article 5

생산에 2개국 이상이 참여할 경우, 경제적으로 정의된 최종 주요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 "경제적으로 정의된" (Economically Justified) 해당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설비된 공장에서 제조되어 새로운 제품의 생산결과를 갖고 오거나 혹은 제조의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Article 6 (Anti-Circumvention)

Article 5의 주요 제조공정이 EC 원산지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목적이며 또한 이러한 우회혐의가 증명될 경우 동제조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없다.

3) 절 차

원산지위원회는 EC 집행위대표가 의장으로 그리고 회원국 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위원장의 발의나 혹은 회원국 대표들의 요구로 위원장이 상정한 원산지 규정의 시행에 관한 모든 문제점을 검토한다.

원산지규정 시행령 채택을 위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① 집행위대표가 초안제출

② 위원회의 의견제시후 가중다수결(76표중 54표)로 결정하며 채택되지 않을시 집행위는 EC 이사회에 동안을 상정한다.

③ 이사회는 3개월 이내에 가중다수결로 결정해야한다.

④ 3개월 이내에 결정치 못할 경우 집행위는 동안을 채택한다.

현재 이러한 절차는 지난 20여년 동안 불과 14번 사용되었으며 전자부문과 관련해서는 Radio/TV, Tape Recorder, IC, Photocopier의 경우가 있다.

비록 이 기간 동안 채택된 원산지규정은 매우적으나 그 중요성이 반감되어서는 않되며, 실제적으로는 이와는 별도로 중요한 비공식 절차가 있다.

4) 비공식 절차

원산지 규정 802/68, Article 13에 의거 위원회는 집행위나 회원국으로부터 발의된 모든 원산지 문제를 조사할 수 있으나, 집행위의 DGXI내 Division B. 2도 실제적으로 원산지 결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는 생산자에 대한 현장실사도 수행하는데 집행위 조사관들은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서 협의케 된다. 이때 집행위의 원산지에 관한 제안이 원산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 가결되면 집행위가 이를 회원국에 통보함으로서 결정된다.

5) 제품별 원산지규정(Product Specific Origin Rule)

원산지 규정 802/68의 명확성을 높여 EC 회원국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자제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Table of Product Specific Origin Regulation

Product	Step	Comments	Type of Rule
(1) Radio/TV	2	-	Value-added
(2) Tape Recorder	2	-	〃
(3) IC	2	-	Technical
(4) Photocopier	4	No Concurring Opinion	〃

집행위가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부가가치 기준보다는 기술적인 테스트(Technical Test)를 우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14번의 원산지 결정 절차중 Radio/TV와 Tape Recorder 두가지에 대해서만 45%의 부가가치 기준을 사용했다.

1987년 유럽의회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Cockfield 집행위원은 다음과 같이 집행위의 기술적 기준적용에 대한 선호도를 설명했다.

"Article 5는 부가가치 기준을 포함치 않고 있으나 제조공정이 복잡하여 기술적 테스트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 기준에 대신 적용되어야 한다.

부가가치 기준과 그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나 특별히 관련된 제품에 적용하게 되며, 만일 부가가치 기준의 적용이 꼭 필요할 경우 각각의 개별적 환경이 고려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가가치 비율에 대한 일반적인 수준의 설정은 어렵다.

6) TV/Radio에 관한 상품별 특별 원산지 규정

적용의 3단계 테스트

① 제품 생산국에서 조립이나 부품결합 등의 공정을 통하여 제품공장도 가격의 4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을 경우 생산국 원산지 취득.

② 45%가 미달된 경우 제품생산의 중요한 단계를 간접적으로 구성하는 부품의 원산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때는 부품의 공장도 가격이 완제품 공장도가격의 35% 이상이어야 한다.

③ 35% 기준을 2개국 이상에서 만족할 때는 둘 중 더 높은 가격을 갖는 부품의 원산국이 원산지로 인정한다.

ex) X사의 제3국 공장	X사의 한국본사공장	원 산 지
45% 부가가치	50%의 부품	제3국원산－①
35% 부품Value	37% 부품Value	한국원산 －③
37% 부품Value	35% 부품Value	제3국원산－③
37% 부품Value	20% 부품Value	제3국원산－③

7) 부가가치 계산방법

CTV/Radio의 원산지 결정을 위한 1차 테스트 45% 부가가치 기준이며 계산방법은 다음 3가지로 구분한다.

① Integral Approach

외부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반제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간주하여 1개국 원산으로 취급되며, 주로 최고 부가가치를 갖는 국가를 원산국으로 인정한다.

가격 기준은 반제품의 구입가격(Into-Factory Price)이다.

② Global Approach

외부 공급자에 의해 생산된 반제품은 그것의 개별 부품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원산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반제품은 부품조달국에 따라 그리고 조립되어진 나라에 따라 1개국 원산지가 아니라 여러 원산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 위의 두 경우에서, 공장 내부에서의 반제품 조립을 위한 부품은 구입가격에 기초하여 가격을 설정하며 단일 원산지를 부여한다.

③ Subassembly Approach

조립공장 내에서 제조되는 반제품은 인위적인 가격이 설정되어 최고 부가가치 테스트에 의거 그 공장이 있는 국가의 원산이 된다.

8) 한국의 제3국 현지공장의 전략

한국의 현지공장들은 현지의 비특혜 원산지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한국 업체들은 제품의 원산지와 관련 다음 두가지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① 제3국 원산지로 신고하고 관망한다.

② EC 원산지 위원회에 비공식 절차 (Informal Ruling)를 요청한다.

①의 선택은 당분간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추후 EC 세관 당국과 원산지 결정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반면, ②의 방법은 원산지 결정에 대해 좀더 공정한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9) CTV

한국, 홍콩, 중국산 소형TV에 대한 반덤핑 규제와 현재 진행중인 CTV제소대상 범위를 고려할 때, EC는 이들 3국 업체들의 제3국 진출 현지공장산 소형TV의 원산지 문제를 제기할 것 같다.

반덤핑 Case가 집행위 DGXXI이 아닌 DGI에서 다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DGI은 DGXXI의 계산방법(7번 항목)과는 다른 부가가치 계산법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집행위가 제3국 현지공장산 소형TV를 한국산으로 판정할 경우 현재 한국에 대해 부과중인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제3국산으로 판정할 때는 개별 덤핑

과 피해율은 각각에 대해 계산할 것이다.

2. EC, 일본산 복사기 반덤핑조사 재심

EC는 반덤핑규제 2423/88 Article 15에 Sunset 조항을 두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Undertaking 등의 조치가 확정되거나 최종 수정된 날로부터 5년후 자동 소멸되게 하였으나 EC 산업의 요청에 의해 재심을 할 수 있도록 유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89년 확정판정을 받은 VCR과 비디오테이프, 그리고 '90년 CTV 등 향후 Sunset 조항에 적용될 품목들이 많이 있는 바 첫 Case인 일본산 복사기의 진전상황을 유의하여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개의 경우 예상되는 것은 관련 EC 산업들이 5년이 경과하기전 다시 재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아국 전자산업의 대EC 로비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C 집행위가 그동안 일본산 복사기(Photocopier)에 부과해온 20%의 반덤핑관세에 대한 전면 재심을 결정한 것은 지난 5년간의 보호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의 경쟁력에 눌려 고군분투하고 있는 EC 산업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집행위는 1987년 20%의 반덤핑관세부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 조치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역내 제조업체들의 제소를 받아들여 이에 대한 재심을 재개했다.

EC의 관련업체인 Rank Xerox, Oce 및 Olivetti 등은 관세가 예정대로 5년이 경과한 올해 자동소멸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영 합작사인 Rank Xerox사의 법무 담당 Mr. David Whibley는 반덤핑 관세부과로 기대했던 수익성 개선이 전혀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동 복사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5년전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올해 2월로서 관세부과에 관한 법적 효력이 자동소멸되게 되어 있었다.

또한 관세부과로 일본산 복사기의 EC내 시장가격이 상승하여 EC 업체들의 경쟁력을 개선하고 결과로 수익성 및 공장가동율, 시장점유율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반덤핑 관세부과의 주요 영향은 일본의 대EC 직접투자를 가속화 시키고 직접수입을 10억 ECU에서 5억 4천만 ECU로 감소시킨 것이며, 가격 또한 비슷한 수준이거나 심지어는 좀 낮은 선을 유지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산 제품은 꾸준한 매출세를 보여 왔다.

Rank Xerox사의 주장에 의하면 어는 일본업체의 제품의 경우 독일시장에서 1988년 DM3,600하던것이 금년도 모델은 DM3,480까지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가격수준은 일본이 그 동안 덤핑관세를 흡수하여 왔으며 결과적으로는 덤핑을 계속해 온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저가격으로 EC업체는 적절한 판매수익(12% 정도로 예상)을 얻지 못해왔으며 시장점유율도 감소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럽 생산업체수도 덤핑관세를 부과할 당시 5개사에서 현재는 3개사로 줄었으며 나머지 2개사는 일본이 인수했다.

한편, 유럽의 대일본 의존도는 증가하고 있는데, Olivetti사는 Canon사와 합작으로 복사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집행위는 Olivetti사를 EC기업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

집행위는 조사개시 당시 일본이 생산치 않아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급 기종(분당 75매이상 복사)도 새로이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을 고려중인데 현재는 일본이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EC는 Rank Xerox사와 Oce사가 진출해 있다.